

## 【 6 】 양주시시정연구위원회조례안

제출연월일 : 2004. 6.  
제출자 : 양주시장

### 1. 제안이유

- 본격적인 지방분권 및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양주시의 지역발전에 필요한 주요정책의 연구개발, 중장기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연구와 시정지문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연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함

### 2. 주요골자

- 가. 위원회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정책의 연구개발, 중·장기 발전계획의 수립·평가·개선에 관한 사항 및 새로운 제도와 시책의 도입·추진 등에 대해 자문함(안 제2조)
- 나.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대학교수, 연구원,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한 전문가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함(안 제3조)
- 다.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고, 위원 결원시 위원하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(안 제4조)
- 라.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와 실무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 및 제10조)
- 마. 위원회의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,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함(안 제12조)
- 바.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이외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(안 제13조)

## 양주시조례 제 호

**양주시시정연구위원회조례안**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자문에 응하고, 주요정책의 연구개발과 중장기 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양주시시정연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·조정한다.

1.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정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
2. 중·장기발전계획의 수립·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
3. 행정제도 및 주요시책의 도입·추진에 관한 사항
4. 지역혁신발전의 중요사항 및 지방분권에 관한 주요사항
5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은 대학교수, 연구원,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한 전문가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.

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제4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, 위원 결원시 위촉하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괄한다.

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,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의안의 제출 및 처리) ①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, 담당관·과·소장(이하 "부서장"이라 한다)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다.

②위원회의 안건은 회의개최일 15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,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안건을 제출한 위원 또는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8조(간사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.

②간사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되고, 서기는 기획담당이 된다.

③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안건의 검토결과 등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④서기는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제9조(분과위원회)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분과위원회는 지역개발, 산업육성, 환경복지, 행정혁신 등 4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③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분과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.

제10조(실무기획단) ①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기획단을 둘 수 있다.

②실무기획단은 소속공무원으로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, 시장이 임명한다.

③실무기획단은 기초자료 수집과 실무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제11조(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)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·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구 할 수 있으며, 요구받은 기관·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12조(수당 등) 위원회등에 출석한 공무원외의 위원과 관계 전문가, 관계 기관·단체직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양주시 시정연구위원회조례안

### □ 제정이유

- 본격적인 지방분권 및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양주시의 지역발전에 필요한 주요정책의 연구개발, 중장기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연구와 시정자문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연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함

### □ 주요골자

- 가. 위원회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정책의 연구개발, 중·장기 발전계획의 수립·평가·개선에 관한 사항 및 새로운 제도와 시책의 도입·추진 등에 대해 자문함(안 제2조)
- 나.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대학교수, 연구원,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한 전문가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함(안 제3조)
- 다.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고, 위원 결원시 위촉하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(안 제4조)
- 라.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와 실무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 및 제10조)
- 마. 위원회의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,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함(안 제12조)
- 바.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이외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(안 제13조)

### □ 제정 조례안 : 별첨

□ 관계법령 발췌서 : 별첨
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

□ 관련사업계획서 : 별첨

□ 예산수반사항 : 5,600천원

- 참석수당 : 5,600천원(70,000원 × 20명 × 4회)

□ 사전예고 : 2004. 6. 14 ~ 6. 23(10일간)

○ 예고결과 :

- 의견제출자
  - 강진규(알오케이경영컨설팅 대표)
  - 주소 : 양주시 고암동 주원마을 217동 2003호
- 의견내용
  - 지역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중점연구 필요
  - 국가공인 경영컨설팅(경영 및 기술지도사)관계자를 포함 위촉
  - 위원 위촉시 공모를 통해 선발 위촉

□ 기타 참고사항 : 별첨

- 경기도정책위원회조례

**제40조의2 (출장소의 설치)** ①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로 한다.

1.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사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을 것
2. 업무의 종합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
3. 관할구역의 범위가 분명할 것

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없다.

1.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(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제외한다)의 경우

2.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동의 경우

③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출장소의 설치승인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사업소”는 “출장소”로 본다.

〔본조신설 95·7·1〕

**제41조 (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)**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따로 법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시·도지사를 거쳐야 하며, 시·도지사는 합의제행정 기관 설치의 타당성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95·7·1, 99·12·31>

**제42조 (자문기관의 설치)**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·권고·전의·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·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95·7·1, 99·12·31>

**제43조** 삭제 <94·7·6>

**제44조 (이장의 임명)** ①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읍·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장은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종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장·면장이 임명한다.

③읍장·면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장을 임명한 때에는 이를 당해 시장 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94·7·6>

## 제 5 장 재 무

**제45조 (지방채발행계획)** ①법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

(추 117)

1.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  2. 당해 지역의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·조정에 관한 사항
  3. 그 밖에 시·도협의회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
- ② 시·도협의회는 의장 1인과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·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- ④ 시·도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⑤ 시·도협의회와 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⑥ 시·도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.
- ⑦ 2 이상의 시·도지사가 상호 협력하여 2 이상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지역혁신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.

#### 제29조(시·군·구 지역혁신협의회의 설치 등)

- ① 시·군·구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·군·구 지역혁신협의회(이하 이 조에서 “시·군·구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1. 당해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  2. 당해 지역의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사항의 협의·조정에 관한 사항
  3. 그 밖에 시·군·구협의회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
- ② 제28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시·군·구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## 제5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

제30조(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)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추진을 쟁정적으로 지원하고, 지역개발 및 지역혁신을 위한 사업을 지역의 특성 및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(이하 “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#### 제31조(회계의 관리·운용)

## 경기도정책위원회조례

[소관부서 : 정책기획관실]

전문개정 2001·6·11 조례 제3114호(제명개정)

**제 1 조 (목적)** 이 조례는 도가 수립하는 각종 중·장기 발전계획과 관련하여 그 정책방향 및 발전목표등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폭넓게 심의·조정하고,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정책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하고,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 2 조 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1. 경기 2020 : 비전과 전략의 수정·보완 및 개선등에 관한 사항
2. 경기발전5개년계획의 수립·평가 및 개선등에 관한 사항
3. 도의 연도별 업무계획의 수립·평가 및 개선등에 관한 사항
4. 도의 각 부문별 중·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및 개선등에 관한 사항
5. 도지사의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의 수립·추진등에 관한 사항
6. 도 및 도내 각 시·군에서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의 도입·추진에 관한 사항
7. 도의 개혁방향의 설정 및 추진계획의 수립·점검·평가등에 관한 사항
8.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과 연계하여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 한 사항

**제 3 조 (구성)**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, 부위원장은 행장(1)부지사와 행정(2)부지사가 된다.

## 경기도정책위원회조례

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, 당연직위원은 기획관리실장과 기획행정실장이 되고, 위촉직위원은 도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하여 교통·경제·환경·문화복지·일반행정등의 분야별 전문가 및 민간단체(NGO)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 다만, 전문성을 요하는 특정분야 안전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지사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  
 ④ 당연직위원과 임시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⑤ 도지사는 위촉직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,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의 범위내에서 보궐위촉한다.

제 4 조 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대행순위는 행정(1)부지사·행정(2)부지사로 한다.

제 5 조 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필요한 때에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6 조 (의안의 제출 및 처리)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, 실·국장과 소속행정기관의 장(이하 "부서장"이라 한다)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을 도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의 안건은 회의개최일 20일전까지 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하고, 간사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안건을 제출한 위원 또는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## 경기도정책위원회조례

제 7 조 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정책기획관이 된다.

②간사는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안건의 검토결과등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 8 조 (실무위원회) ①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검토하고, 분야별로 실무차원의 실질적인 심의·조정·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실무위원회는 분야별 또는 관련안건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때에 10인이내로 구성·운영하며,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및 정책기획관, 해당 분야의 전문직공무원, 관계실·과장, 외부전문가중에서 기능수행에 적합한 실무책임자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③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실무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2년의 범위내에서 적절히 정하여 운영하되, 운영목적이 달성되면 자동종료된다.

④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분야별 또는 업무별 계획수립시에 도지사가 정하고, 실무위원회 위원장(이하 “실무위원장”이라 한다)과 협의하여 운영한다.

⑤실무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적합한 자를 도지사가 선임·위촉한다.

⑥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를 두며, 간사는 분야별 또는 업무별 부서장이 소속된 부서의 주무담당이 된다.

제 9 조 (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)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(이하 “위원회등”이라 한다)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·단체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요구받은 기관·단

경기도정책위원회조례

체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10조 (수당등) ①위원회등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·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등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사업과 관련된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다.

제11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 <2001.6.11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시정연구위원회 설치운영계획

본격적인 지방분권 및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도시행정에 필요한 주요 정책의 연구개발과 중장기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연구와 시정자문이 요구됨에 따라 시정연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고자 함.

### □ 설치 개요
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(자문기관의 설치)
-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(시·군·구 지역혁신협의회의 설치 등)

### □ 설치 개요

- 구성인원 : 20인 이내 (위원장 및 부위원장 : 위원간의 호선)
- 위촉대상 : 대학교수, 연구원, 전문가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
- 위촉 및 임기 : 시장이 위촉하되 2년으로 하고 연임가능
- 주요 기능
  -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정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
  - 중·장기발전계획의 수립·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
  - 행정제도 및 주요시책의 도입·추진에 관한 사항
  - 지역혁신발전의 중요사항 및 지방분권에 관한 주요사항
  -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

### □ 세부운영계획

- 회의개최 : 위원장이 소집하고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
- 분과위원회 : 4개 분과설치(지역개발, 산업육성, 사회개발, 행정혁신 등)
- 실무기획단 : 10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
- 안건제출 : 담당관·과·소장 등이 회의개최 15일 이내 제출  
※ 경기도, 타 시군 장기발전 및 정책위원회 설치 운영 현황 : 별첨

### □ 추진일정

- 2004. 6월 :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개최
- 2004. 7~9월 : 시의회 상정 및 위원회 위촉 운영

## 장기 발전자문 및 정책 위원회 관련 조례 현황

구분	경기도	화성시	파주시	성남시	군포시	양주시
조례명	경기도정책위원회조례	지역발전연구원 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	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	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	시정발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조례	시정연구위원회 조례
성격	심의조정	자문기구	조언 권고 건의	자문기구	심의조정	자문기구
기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경기2020비전과 전략 수정보완</li> <li>· 5개년계획 수립 평가</li> <li>· 도지사 공약 사항 실천계획</li> <li>· 새로운 제도 및 시책 도입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시장주요시책 계획</li> <li>· 지역사회발전 계획</li> <li>· 지역 주요 현안과제 방안</li> <li>· 행정제도 및 시책개선사항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행정관행 및 제도개선</li> <li>·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</li> <li>· 사무능률의 개선 방안</li> <li>· 경영수의사업의 발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미래종합발전 계획 수립</li> <li>· 중장기 발전 목표 설정</li> <li>· 시정의 개혁 방향 및 정책 설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주요정책의 연구개발</li> <li>· 장기발전계획 및 5개년계획</li> <li>· 시정개혁방향의 설정</li> <li>· 지역경제에 관한 연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주요정책의 연구</li> <li>· 장기발전계획 및 5개년계획</li> <li>· 주요업무평가 심의</li> <li>· 기타 시정발전 방안</li> </ul>
구성	위원장 : 도지사 부위원장 : 부지사 위원 : 40인 이내 당연직 : 공무원 위촉직 : 관련 전문가	위원장 : 시장 부위원장 : 부시장 위원 : 대학교수 등 위원 : 20~33인	위원장 및 부위원장 : 호선 위원 : 20인 내외 (전문 지식과 경험자)	위원장 : 시장 부위원장 : 부시장 위원 : 20인 내외	위원장 및 부위원장 : 호선 위원 : 30인 이내 당연직 : 관련 공무원 위촉직 : 관련 전문가	위원장 및 부위원장 : 호선 위원 : 20인 내외
회의	도지사가 필요 한 때	전체회의 : 년 1회 이상 분과위원회 : 필요시	정기회의 : 분기 1회 수시소집 : 위원 요구	전체회의 : 년 1회 이상 분과위원회 : 분기 1회	정기회 : 분기 1회 임시회 : 필요시	정기회 : 년 1회 이상 임시회 : 필요시
임기	2년, 연임	2년, 연임	2년	2년, 연임	2년, 연임	2년, 연임
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	구성 운영 : 도지사 분야별 10인 이내	7개분과 위원회 분과위원 : 8인 이내	창안팀을 설치	3개분과위원회 분과위원 : 7인 내외	분과위원회 : 규칙 위임 특별위원회 : 10명 내외 실무기획단 : 소속 공무원	4개 분과위원회 : 4~6인 실무기획단 : 10인 내외
수당등	예산법위 내수당 여비 및 기타 경비 지급	예산법위내에서 수당 지급	예산법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연구비	예산법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연구비	예산의 법 위 안에서 수당 및 연구비	예산법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연구비
제정시기	2001.6.11	2001. 3. 21	2000. 6. 12	1996.3.23	1999. 1. 15	2004 9월 예정